

# 순창군이 순창군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합니다



## [보험 계약사항]

**보험계약자** 순창군청

**피 보 험 자**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법적상속인)

**가입 절 차** 순창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 험 기 간** 그해 2. 6 ~ 다음해 2. 5(2014년부터 가입)

**보 험 사** DB손해보험(주), (주) KB손해보험

##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절차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보험회사 전화문의  
**1899-7751**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보험회사 심사

보상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2. 진단위로금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 3.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4.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5.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6.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 요망

순창군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문의 | DB손해보험(주) T.1899-7751 F. 0505-137-0051

순창이 참 좋다.  
Savor Your Life with Sunchang

# 순창군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자전거,  
이젠 편안한 마음으로 타세요.

군비부담으로 모든 군민들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순창군  
SUNCHANG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사망	순창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순창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순창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단, 4주(28일)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 4주(28일)이상 : 20만원</li> <li>진단 5주(35일)이상 : 30만원</li> <li>진단 6주(42일)이상 : 40만원</li> <li>진단 7주(49일)이상 : 50만원</li> <li>진단 8주(56일)이상 : 60만원</li> </ul>
자전거사고 벌금	순창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 세 미만자 제외)	1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순창군민이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순창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 (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장범위

### ■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리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외 광범위하게 해석)

**보장기간** 그해 2월 6일 00:00 ~ 다음해 2월 5일 24시까지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청구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 보험금의 청구 등 문의처

- DB 손해보험(주) (T.1899-7751)

## 자전거 보험 Q&A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창군민이 순창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나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자는 사망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 파손 또는 도난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자전거 파손 또는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